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연구원/고고학] 신규 채용 재공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공고 제2026 - 31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지원코드	채용예정분야	직 종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채용방법
고고학	연구원 (부소산)	기간제	1명	○ 부여 부소산성 조사 연구 -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 유물정리 ○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업무 및 연구소 업무 지원	국립부여문화 유산연구소 (충남 부여군)	제한경쟁채용 (학위)

※ 구체적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제12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포함

※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9조(정년)의 규정을 따름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나. 응시자격 * 자격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일('26.9.29.)

채용분야	내용
연구원 (부여 부소산성 / 고고학)	○ (응시자격)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정규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 (소지 또는 예정)한 사람 * 관련학과: 문화유산 전공(고고학과, 융합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박물관학과 등 고고학 관련 학과)

<경력 범위>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야 함.
- '경력'은 채용 분야의 직무(담당)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담당자 성명·연락처 기재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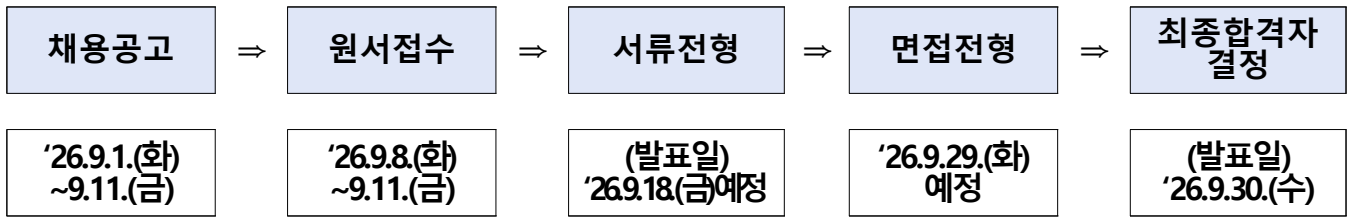
다. 우대사항 * 자격판단 기준일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6.9.11.)

채용분야	내용
연구원 (부여 부소산성 / 고고학)	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조사원'이상인 자 * ① "국가유산 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 <조사원 정보관리>에서 자격요건 등이 표시된 이미지 자료(화면캡처) 혹은 조사요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발굴조사 보고서), ② 발굴조사 경력(별지서식 제10호) → ①, ② 동시 제출 시 인정 ② 관련경력: 매장유산 분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재단, 공공기관, 발굴조사 전문법인 등)에서의 담당예정업무 관련 근무 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③ KCI급(등재/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논문 및 발표, 학위논문)

라. 가점사항 * 자격판단 기준일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6.9.11.)

구분		부가 점수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수첩(등록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3.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 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평정요소를 상, 중, 하 로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하여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위원중 1인이 기피할 경우>

-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시) A위원이 기피하고, B위원이 상 2개 중 3개, C위원이 상 4개, 중1개로 평가한 경우, A위원의 점수는 B와 C위원의 평균인 상 3개, 중 2개임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4. 예비합격자 제도

가.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할 수 있음

-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나.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5. 재공고 사항

가. 공고 결과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6.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 9. 1.(화) ~ ‘26. 9. 11.(금)	국가유산청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 소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기간	‘26. 9. 8.(화) ~ ‘26. 9. 11.(금)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방문제출
서류전형	‘26. 9. 17.(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 9. 18.(금) 예정	국가유산청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 소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면접전형	‘26. 9. 29.(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9. 30.(수) 예정	국가유산청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 소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채용 예정일	‘26. 10. 6.(화) 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 기간 : '26. 9. 8.(화) ~ '26. 9. 11.(금) 18:00

나.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9.11.) 18:00까지 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접수 주소 : (3312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34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 채용담당자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bssn86@korea.kr

※ 전자우편(e-mail)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응시성명(고고학)” 으로 기재하여 발송[예 : 기간제근로자 응시_홍길동(고고학)]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이력에 대한 증빙 자료의 경우 필수 제출)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학위논문 초록(국문) 사본 1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관련분야 학술활동 사본 1부	
	발굴조사 경력 자료(양식) 1부	○ 별지서식 제10호
서류 합격자 (해당자에 한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서류 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면접 합격자 (해당자에 한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면접 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8. 채용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일 ~ 2026. 12.31.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임금책정안」에 의거하여 초임호봉 확정

※ 기간제근로자는 일정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기간 만료 및 사업종료시 당연 퇴직. 단, 이번 채용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연구 일정에 따라 채용 연장 가능

※ 근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5년 까지 연장 할 수 있음

9.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18:00, 주40시간 (월209시간) 근무

나.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다. 보수 : 「2026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 임금책정안」
(2026.3)에 의거하여 초임호봉 확정

< 「2026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임금책정안」 (2026.1.) 기준 >

연구원

- 기본급여(1호봉 기준): 월2,397,170원
- 식대: 월 16만원(주간 출근일 비례지급)
- 명절휴가비: 설·추석에 기본급의 60%씩 각 1회 지급
- 맞춤형 복지포인트 : 1인당 50만원(500포인트)씩 지급(채용 후 비례지급)
- 생일상품권 : 1인당 50,000원 상당 상품권 지급(재직 중 생일 도래시 지급)
-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10. 안내 및 참고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0. 6. ~ 10.16.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해야 합니다.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자.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차.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카.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 ①, ②, 모두 제출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타.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041-830-5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7. 결격사유 검증 및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각 1부
 8. 결격사유 부존재 및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각 1부
 9. 발굴조사 경력 자료(양식) 1부. 끝.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 접수 번호			응시분야	연구원(고고학분야)	사진부착 불요함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전화 (휴대전화)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시표					사진부착 불요함
< 기간제근로자(부여 부소산성) 채용시험 >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시 번호			응시분야		
2026년 월 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한글)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표기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공통	-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적격 ☐ 부적격		
	- 응시연령이 만18세 이상인사람, 만60세 미만인 사람 ☐ 적격 ☐ 부적격		
학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적격 ☐ 부적격		
	- 응시분야 관련학과 ☐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 박사 취득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예시) 백제 고고학	‘00.00.00	고고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우대 사항 여부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응시자격 요건 참조) ☐ 조사요원 기준(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중 택1)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학술활동(논문 및 발표) ☐ 관련분야 자격증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관련분야 경력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연구원 (보조원)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관련분야 학술활동	구분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투고일자	제목	비고
	논문/발표		‘00.00.00		공저자, 제1저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자격/면허명	자격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00.00.00		

4. **가점사항** ※ 공고문의 가점사항을 확인하여 작성, 해당 없을 시 삭제

가점사항	구분	등록증 번호	최초, 재취득 등록일	비고
			'00.00.00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응시자격사항 : 가. 응시자격분야에서 정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
- ⑦ 우대요건 : 나. 우대요건 여부를 판단하여✓표시
- ⑧ 가점사항 : 다. 가점사항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⑨ 주요경력 : 학력, 유관기관 근무경력 작성

「※」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연구원(고고학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붙임 5]<별지서식 제4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제한경쟁채용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사유 연구소 소관 업무인 백제 문화권역 발굴 조사·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입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문화재청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개인정보(자격증 · 경력 · 학위) 확인기관</u>	<u>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u>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애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 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 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2026년 월 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0000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생년월일 . . .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인
의
의

[붙임 9]<별지서식 제10호> (관련경력 해당자에 한함)

발굴조사 경력 자료(양식)

○ ○ ○[준조사원]

전공 : 고고학

최종학력 : 학사 졸업(2014. 5. 고고학전공 / 학사졸업 1997. 2. 사학졸업)

학위논문 : 년도, 제목, 학위수여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발굴조사 경력	경력사항	소속기관	조사단등급
2015-01-01	2015-05-31		○○○ 발굴조사	(재) 000재단	준조사원
2016-01-01	2017-12-31	731	○○○ 발굴조사	00문화재연구소	준조사원
2018-03-01	2019-02-28	365	○○○ 발굴조사	국립00문화재연구소	준조사원
2020-03-01	2020-12-31	306	○○○ 발굴조사	국립00문화재연구소	조사원
2021-05-01	2022-07-31	457	○○○ 발굴조사	국립00문화재연구소	조사원
조사일수				2,224	

* 발굴조사 경력만 작성(발굴조사보고서 작성 등은 미기입)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00. 00 .

응시자 ○ ○ ○ (서명 또는 인)